

제9장 디지털 무역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적용대상인이란 제8.1조(정의)에 정의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디지털제품이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생산되며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또는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1 2}

전자인증이란 전자 통신 또는 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신원을 검증하거나 전자 통신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절차 또는 행위를 말한다.

전자송장이란 구조화된 디지털 형식을 사용하여 공급자와 구매자 간 지급 요청을 자동으로 생성, 교환 및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지급이란 지급인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취인이 수용 가능한 금전상 청구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있거나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서명자를 확인하고 그 서명자가 각 당사국의 규제 체계에 따라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를 승인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광학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적 수단을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화폐를 포함한 금융상품의 디지털화된 표현은 포함하지 않는다.

² “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또는 상품 무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양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전송을 말한다.

핀테크란 금융서비스의 전달과 이용을 개선하고 자동화하는 기술의 사용을 말한다.

정부 데이터란 중앙정부가 보유하는 비독점적 데이터를 말한다.

개인 데이터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말한다.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그리고

요청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란 수신자의 동의 없이 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발송되는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말한다.

제9.2조

목적

1. 당사국들은 디지털 무역이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디지털 무역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하는 체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이러한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의 추가적인 진전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제9.3조

적용범위 및 일반규정

1. 이 장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제9.12조를 제외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당사국을 대신하여 보유되거나 처리되는 정보, 또는 그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그러한 정보에 관련된 조치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전달되거나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제8장(서비스무역) 및 그 부속서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그러한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포함)의 대상임을 확인한다.

4. 제9.11조 및 제9.14조는 당사국의 조치가 다음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한도에서, 제8장(서비스무역)의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의 측면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라 만들어진 당사국의 약속에 명시되거나 당사국의 약속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모든 제한 및 조건, 또는

나. 제8장(서비스무역)의 의무에 적용 가능한 모든 예외

5. 당사국들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 장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국들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신의성실하게 협의에 참여하고, 이러한 문제를 공동위원회로 회부함으로써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 방안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6.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 무역은 소비자와 관련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가능한 거래를 포함한다.

제9.4조

중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규정한 절차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모든 공개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2.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무역행정문서의 전자본을 영어로 제공한다.
3.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³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9.5조

국내 전자거래 체계

1. 각 당사국은 「국제연합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1996)의 원칙을 고려하여 전자거래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전자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적 부담을 피한다. 그리고
 - 나. 무역 서류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전자거래를 위한 자국의 법 체계의 개발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한다.

제9.6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1. 자국의 법에 따라 달리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서명이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근거만으로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다.

³ 이는 당사국들 간 특혜무역협정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에 제공되는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목적상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인증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 가.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그 거래를 위하여 적절한 인증 방법을 상호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 또는
 - 나. 전자거래의 당사자가 자신의 거래가 인증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 또는 행정 당국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특정한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인증의 방법이 일정한 성능 기준을 충족하거나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공인된 당국에 의하여 증명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당사국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인증의 이용을 장려한다.

제9.7조 디지털 신원

1. 개인 또는 기업의 디지털 신원에 대한 당사국들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의 연결을 확대할 것임을 인정하고, 각 당사국이 디지털 신원에 대하여 상이한 구현 및 법적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각국의 디지털 신원 체제 간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구현 간 기술적 상호운용성 또는 공통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 나. 자율적으로 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부여되었는지에 관계없이 각 당사국의 디지털 신원 및 그 법적 효과에 대한 인정
 - 다. 보다 폭넓은 국제 체계의 수립 또는 유지, 그리고

라. 디지털 신원 정책 및 규제, 기술 구현 및 보안 표준, 그리고 사용자 채택과 관련된 우수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전문 지식의 교환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과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9.8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당사국들은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에 참여할 때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 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피해 또는 잠재적 피해를 불러오는 오도적이고 기만적이며 사기적인 상업 활동을 금지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당사국들은 소비자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자국이 전자상거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가. 소비자가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나. 기업이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제9.9조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1. 각 당사국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에 관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게 그러한 메시지의 지속적 수신을 방지하기 위한 수신자의 능력을 촉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나.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상업용 전자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치, 또는

다.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최소화를 달리 규정하는 조치

2.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제공자에 대한 청구 수단을 제공한다.

3. 당사국들은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의 규제에 관하여 상호 우려가 있는 적절한 경우에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4. 당사국들은 요청하지 않은 메시지와 광고의 사전 수신 동의 및 사후 수신 거부에 대한 수신자의 재량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9.10조

개인 데이터 보호

1. 당사국들은 전자 거래를 수행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인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의 경제적·사회적 유익함과 그러한 보호가 디지털 무역에서 소비자의 신뢰 향상에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디지털 무역 이용자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규정하는 법

체계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⁴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 체계를 개발할 때, 각 당사국은 관련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의 원칙 및 지침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3. 각 당사국은 개인이 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자국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정보를 공표한다.

4. 당사국들은 기업이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자신의 정책과 절차를 인터넷상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장려한다.

제9.1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⁵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이전에 관하여 자국의 규제요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2.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경 간 정보의 이전이 적용대상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것일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그러한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공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제2항과 불합치하는 모든 조치⁶. 다만, 그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 수단을 구성하게 될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는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사생활 또는 개인 데이터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법, 사생활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법이나 사생활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 약속 이행을 규정하는 법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함으로써 이 항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⁵ 이 조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⁶ 이 호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그러한 정당한 공공정책 이행의 필요성은 이행 당사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확인한다.

모든 조치. 그러한 조치는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9.12조

정부 데이터 공개

1. 당사국들은 정부 데이터에 대한 대중의 접근 및 사용의 촉진이 경제적·사회적 이익, 경쟁력,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독려하는 데 기여함을 인정한다.
2.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정부 데이터가 대중에 의하여 자유롭게 검색, 불리오기,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 되는 것을 허용하는,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공개된 형식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13조

디지털 정부

1. 당사국들은 기술이 보다 효율적이고 민첩한 정부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정부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정부가 자국 시민과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필요에 더 잘 부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정부 운영 및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디지털 포용성을 증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방식으로 접근성, 투명성 및 책임성에 중점을 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부 절차를 채택한다.
 - 나. 디지털 의제 문제에 대하여 범분야적 및 정부 간 조정과 협력을 증진한다.
 - 다. 디지털 포용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 절차, 서비스 및 정책을 형성한다.
 - 라.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 전달을 위한 공공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공공재 및 공공

디지털 조력자를 증진한다.

- 마. 자연재해,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역량 구축을 위하여 신생 기술을 활용한다.
- 바. 공공 정책의 효율적인 계획, 전달 및 점검을 위하여 정부에서 인공지능과 다른 신생 기술을 활용한다.
- 사. 신생 기술의 신뢰할 만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하여 규범과 윤리적 원칙을 개발한다. 그리고
- 아. 일반 대중과 정부 인력 모두의 디지털 역량 및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증진한다.

3. 디지털 정부 이니셔티브에 대한 당사국들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당사국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은 정부 및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디지털 정부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한다.
- 나. 디지털 정부와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 전달에 대한 우수 관행을 공유한다. 그리고
- 다. 공무원의 교류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디지털 정부 역량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문 또는 훈련을 제공한다.

제9.14조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계약, 발주되거나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제품이나 그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나 소유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자국이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는다.⁷

2. 제1항은 제12장(지식재산권)에 포함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3. 당사국들은 이 조가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해한다.

4. 이 조는 방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15조

관세

1. 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간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자국의 현재 관행을 유지한다. 각 당사국은 WTO의 관련된 각료회의 결정의 변경에 합치하도록 자국의 관행을 조정할 권리를 유보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경우라면, 당사국이 디지털 방식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에 대하여 그러한 내국세, 수수료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9.16조

전자송장

1. 당사국들은 상업적 거래의 효율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송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상호운용이 가능하도록

⁷ 제9.14조의 의무를 해석할 때, 당사국들은 디지털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가 내국민 대우로 한정되며 최혜국 대우는 포함하지 않음을 양해한다.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2. 국가법과 법적 체계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전자송장에 관련된 조치의 이행이 각 당사국의 전자송장 체계 간의 국경 간 상호운용성을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전자송장에 관련된 자국 조치의 기반을 국제 체계에 두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당사국들은 관련 국제 체계를 고려하면서,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송장 시스템의 전 세계적인 채택을 증진하는 것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기업이 전자송장을 채택하는 것을 증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고 또는 촉진한다.

나. 전자송장을 지원하는 정책, 인프라 및 절차의 채택을 장려한다.

다. 전자송장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전자송장을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그리고

라. 우수 관행을 공유하고 국제 전자송장 시스템의 채택을 증진한다.

제9.17조

전자지급

전자지급의 급속한 성장과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상호운용이 가능한 전자지급 시스템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전자지급 인프라의 상호운용성과 상호연결성을 증진한다.

나. 전자지급 서비스에서 혁신과 경쟁을 장려한다.

다.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도구 및 프로토콜과

같은 개방형 플랫폼 및 구조의 사용을 촉진하고, 전자지급에서 보다 높은 상호운용성, 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우, 지급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제품 및 서비스용 API를 자국 영역에 설립된 제3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도록 장려한다. 그리고

- 라. 규제 및 산업 샌드박스 채택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혁신과 경쟁 그리고 새로운 금융 및 전자지급 상품과 서비스의 도입을 시의적절하게 촉진한다.

제9.18조

디지털 무역을 위한 인터넷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

디지털 무역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 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제 체계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 및 응용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 나. 자신이 선택한 장치가 네트워크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제 체계에 의하여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장치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것

제9.19조

사이버보안

당사국들은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을 증진한다는 비전을 공유하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이 디지털 무역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다음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 가.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국의 적절한 권한 있는 당국의 역량 구축
- 나. 경험 및 우수 관행의 교환을 통하여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및 추가 협력 강화,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의 전자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침입 또는 악성코드 유포의 적발 및 경감에 대한 협력 강조

제9.20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1. 당사국들은 디지털 무역에서 역동성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2. 디지털 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역량과 시장 범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정보와 우수 관행을 교환한다.
 - 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국제 공급자, 구매자 및 그 밖의 잠재적 사업 파트너와 연결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그 밖의 메커니즘에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그리고
 - 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디지털 무역에 적응하고 번창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9.21조

인공지능

1. 당사국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이 자연인과 기업에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디지털 무역에서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또한 AI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위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디지털 무역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은 더 나아가 그러한 체계가 가능한 한 국제적으로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3.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관련 지역 및 국제 포럼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는 AI 기술의 사용을 지원하는 체계(AI 거버넌스 체계)의 개발 및 채택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증진한다.

나. 그러한 AI 거버넌스 체계를 개발할 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또는 지침을 고려한다. 그리고

다. AI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 관련된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화의 증진 및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협력한다.

제9.22조

협력

당사국들에 대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관련된 법, 규정 및 그 이행에 대한 것을 포함하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 그리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기 위하여,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제적 사안에 관한 대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다음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

가. 온라인 소비자 보호

나. 개인 데이터 보호

다. 디지털 무역을 위한 자금세탁 방지

- 라. 요청하지 않은 상업용 전자 메시지
- 마. 디지털 무역에 대한 지식재산 우려사항
- 바. 디지털 무역에서 중소기업의 도전과제
- 사. 디지털 정부
- 아. 디지털 신원
- 자. 핀테크, 그리고
- 차. 당사국들이 상호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